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61

발의연월일: 2024. 8. 8.

발 의 자:임호선·장종태·이학영

권칠승 · 강준현 · 윤호중

정준호 · 김승원 · 윤준병

주철현 · 이병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,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 한 범위에서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 고 있음.

그런데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 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, 청원장, 청원사, 청원위, 청원감으로 구분하고,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,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으로 써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 및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 조의2 신설 및 제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,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직급 및 승진)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청원감
- 2. 청원위
- 3. 청원사
- 4. 청원장
- 5. 청원경
- ② 청원주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서해당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청원장, 청원사, 청원위, 청원감으로 각각 승진임용한다. 다만, 청원주가 업무 실적이 우수한 청원경찰 등을 특별히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.
- 1. 청원경을 청원장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: 해당 직급에서 9년

이상 근속자

- 2. 청원장을 청원사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: 해당 직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
- 3. 청원사를 청원위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: 해당 직급에서 7년 이 상 근속자
- 4. 청원위를 청원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: 해당 직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
- ③ 청원주는 직급별 · 재직기간별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④ 청원주는 청원위를 청원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대 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(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1명 을 가산한다)를 초과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.
- ⑤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, 승진임용의 기준·방법·절차·주기, 그 밖에 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조의3(종전의 제5조의2)제2항 중 "해임"을 "해임, 강등"으로 한다.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"를 "국가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령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적용하여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청원경: 순경
- 2. 청원장: 경장

3. 청원사: 경사

4. 청원위: 경위

5. 청원감: 경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직급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- 1. 청원경찰 재직기간 9년 미만: 청원경
- 2. 청원경찰 재직기간 9년 이상 17년 미만: 청원장
- 3. 청원경찰 재직기간 17년 이상 24년 미만: 청원사
- 4. 청원경찰 재직기간 24년 이상 30년 미만: 청원위
- 5. 청원경찰 재직기간 30년 이상: 청원감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/u>	제5조의2(국가기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 청원경찰의 직급 및 승 진)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. 1. 청원감 2. 청원위 3. 청원사 4. 청원장 5. 청원경 ② 청원주는 국가기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 찰로서 해당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청원장, 청원사, 청원위, 청원감 으로 각각 승진임용한다. 다만, 청원주가 업무 실적이 우수한 청원경찰 등을 특별히 상위 직 급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직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단

축할 수 있다.

- 1. 청원경을 청원장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: 해당 직급에서 9년 이상 근속자
- 2. 청원장을 청원사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: 해당 직급에서8년 이상 근속자
- 3. 청원사를 청원위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: 해당 직급에서7년 이상 근속자
- 4. 청원위를 청원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: 해당 직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
- ③ 청원주는 직급별·재직기간 별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 여야 한다.
- ④ 청원주는 청원위를 청원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(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1명을 가산한다)를 초과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.
- ⑤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을위한 근속연수의 계산, 승진임용의 기준・방법・절차・주기,그 밖에 승진임용에 필요한 사

- <u>제5조의2(</u>청원경찰의 징계) ① (생 략)
 -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, <u>해임</u>, 정직,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.
 - ③ (생 략)

제6조(청원경찰경비) ① (생 략)

-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<u>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</u>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1. 재직기간 15년 미만: 순경
- 2.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 만: 경장
- 3.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 만: 경사
- 4. 재직기간 30년 이상: 경위
- ③ (생 략)
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5조의3(청원경찰의 징계) ①
(현행과 같음)
②
<u>해임, 강등</u>
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청원경찰경비) ① (현행과
같음)
②
국가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령
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수를
<u> 적용하여</u>
<u>1. 청원경: 순경</u>
<u>2. 청원장: 경장</u>
이 취이기 가기

- 3. 청원사: 경사
- 4. 청원위: 경위
- 5. 청원감: 경감
- ③ (현행과 같음)